물질 안전 보건자료(MSDS)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GRAPE A63073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 용 도 : PERFUMERY ■ 사용상 제한 :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구분 3
- 피부부식성 / 피부자극성 구분 2
- 심한 눈 손상성/눈자극성 구분 2
-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
-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경 고

■ 유해·위험 문구

H226	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41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예방조치 문구

- 예 방

P210	열, 스파크, 화염, 고열로부터 격리하시오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 수용설비를 접지, 접합 시키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 환기, 조명, 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80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81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대 응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을(를) 사용하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P337+P313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 주의를 받으시오.
P321	()처치를 하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 주의를 받으시오.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P308+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저 장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 폐 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	-----	-----	-----	-----	------	-----	-----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해당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혼합물이므로 이용되지 않음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혼합물이므로 이용되지 않음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혼합물이므로 이용되지 않음

■ 함유량(%)

성 분 명	CAS NO.	%
CARBITOL	111-90-0	36.50
DIPROPYLENE GLYCOL	25265-71-8	16.98
METHYL ANTHRANILATE	134-20-3	14.55
ETHYL BUTYRATE	105-54-4	9.35
ETHYL PROPIONATE	105-37-3	7.23
LINALOOL	78-70-6	4.79
ETHYL CAPROATE	123-66-0	4.69
ETHYL MALTOL	4940-11-8	2.43
PHENYL ETHYL ALCOHOL	60-12-8	1.77
STYRALLYL ACETATE	93-92-5	1.71
계		100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적어도 10분 동안 충분한 물로 즉각 씻는다.

의사의 충고를 받으라.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에 접촉 시 비누와 물로 씻는다.

충분한 물과 희석된 알콜로 씻어낸다.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휴식을 취한다.

라. 먹었을 때: 물로 입안을 씻어낸다.

긴급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응급 시 담당자로부터 MSDS를 입수하여 물질의 특성을 먼저 숙지토록 한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 적절한 소화제 : 탄산가스, 분말소화기 등

- 부적절한 소화제 : 할로겐 소화제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 일산화탄소 및 기타질소산화물이 함유한 가스 생성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안전화, 소방복, 장갑, 안면보호구등을 착용하고, 일산화탄소 및 기타질소화합물이 함유한 가스생성 화재 시 주변설비 등에 살수하여 냉각한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부조에 착화원이 되는 것은 신속히 제거한다. 소화용 기자재를 준비한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유출한 제품이 하천 등 으로 배출하여 환경에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물과 분리되어 상층에 포집하여 회수한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취급하는 장소 주변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 누출 시 에는 조기에 완전히 제거한다.
- 접촉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나. 안전한 저장 방법:
- 건조하며 환기가 잘되고, 직사광선 및 화기가 없는 실온에 보관할것. (영하의 온도나 높은 고온을 피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미설정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취급에 있어서 가능한 밀폐된 장치, 기기 또는 국소 배기 장치를 사용한다
-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고농도 경우는 송기 마스크 사용
- 눈 보호 : 보호안경
 손 보호 : 내유성 장갑
 신체보호 :내유성 앞치마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미황색 내지 황색의 액체

나. 냄새:

다. 냄새 역치 : 자료없음

라. pH: 해당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해당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해당없음

사. 인화점 : 37℃

아. 증발 속도 : 해당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해당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해당없음

카. 증기압: 해당없음

타. 용해도: 알콜에 가용

파. 증기밀도: 해당없음

하. 비중: 0.978 - 0.998

거. 굴절율: 1.450 - 1.460

너.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해당없음

더. 자연발화 온도: 해당없음

러. 분해 온도: 해당없음

머. 점도 : 해당없음

버. 분자량 : 해당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통상 취급조건하 안정함

나. 피해야 할 조건 : 정전기

다. 피해야 할 물질: 화기, 불꽃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해당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호흡기 : 자료없음
 경구 : 자료없음
 눈, 피부 :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 독성 : 자료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피부자극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눈자극

호흡기 과민성 : 자료없음피부 과민성 : 자료없음

■ 발암성 : 자료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인비트로/애매모호

■ 생식독성 : 자료없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자료없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자료없음

■ 흡인 유해성 :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없음

다. 생물 농축성: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위탁처리 한다.

나. 폐기시 주의사항 :

- 유구되는 개인보호 장고를 참용한다 다. 개상 횟수 및 최종 개령 일차 : 2회/2020. 03. 31
- 취급 후 손을 깨끗히 씼는다.
- 2차 유해물 발생방지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1993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인화성액체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 Ⅲ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운송 시 용기 밖으로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 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함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4류 제2석유류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지정 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개별성분 GHS-MSDS 참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단일화학물질 GHS-MSDS 참조

나. 최초 작성일자 : 2016.06.20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회/2020. 03. 31